



통보

부록

본 2023년 3월 16일자 통신문은 부룬디, 르완다, 탄자니아, 우간다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람한다.

**제목:** DEAS 377-2: 2021, 화장품 및 화장 제품 - 제 2 부: 규정된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화장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, 제 3 판

| 부록 사유: |   |
|--------|---|
| [ ]    | 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   |
| [X]    | 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 2023-02-24  |
| [ ]    | 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   |
| [ ]    | 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   |
| [ ]    | 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<sup>1</sup> :   |
| [ ]    | 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<br>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 ]    | 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<sup>1</sup> :<br>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 (해당될 경우): |
| [ ]    | 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<sup>1</sup> :  |
| [ ]    | 기타:   |

**내용:** 부룬디, 르완다, 탄자니아, 우간다는 G/TBT/N/BDI/146, G/TBT/N/RWA/525, G/TBT/N/TZA/635 와 G/TBT/N/UGA/1435 로 고지한 동아프리카 표준안; DEAS 377-2: 2021, 화장품 및 화장 제품 - 제 2 부: 규정된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화장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, 제 3 판이 2023년 2월 24일 동아프리카공동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WTO 회원국에 알린다.

<sup>1</sup> 최종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